

「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6월 17일

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국가산업단지 확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날로 늘어나는 민원과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사 인근 부지인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를 매입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매입

○ 토 지 : 4,815m²

○ 건 물 : 1,130m²

○ 기준가격 : 8,200,000천원(가감평가 기준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본 변경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「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
 - 구미시 송정동 47번지의 대지 4,815㎡와 건물 1,130㎡ (가감정가 8,200,000천원)를 취득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임
 - 본 건은 만성적 주차난 해소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환경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